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16.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의 제목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을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을 “영 제4조의2제4항 본문”으로,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세율”을 “1세대 1주택자”로, “상속주택의”를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을 “영 제4조의2제4항”으로,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을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로 한다.

제4조의6 및 제4조의7을 각각 제4조의7 및 제4조의8로 하고,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4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7(중전의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2항”을 “영 제4조의4제2항”으로,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2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4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5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7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2항”을 “영 제4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8(중전의 제4조의7)제1항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납부유예 신청 관련 서식)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2.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 주택

⑤ 소재지	
-------	--

3.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현황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⑥ 신청대상	⑦ 소 재 지	⑧공시가격	⑨취득일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주택 현황			
				⑩피상속인(사망자)		⑪상속 지분	⑫ 소재지 구분
				성명	주민번호		
[] 대체취득주택							[] 수도권
[] 상속주택							[] 비수도권
[] 지방저가주택							
[] 대체취득주택							[] 수도권
[] 상속주택							[] 비수도권
[] 지방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

※ 해당 신청서를 접수 시 기존에 신고된 신청서의 주택도 삭제처리 되오니 기존 신고된 주택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1.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②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4. ④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소재지란 : 특례 적용 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6. ⑥ 신청대상란 : “대체취득주택”이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계획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 주택에 대한 상속 지분율이 40%이하 또는 상속된 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저가주택”이란 주택 전체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8. ⑦ 소재지란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9. ⑧ 공시가격란 : ⑦ 소재지에 적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이 때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10. ⑨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란 :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취득일을 적으며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을 적습니다.
11. ⑩ 피상속인(사망자)란 : ⑦ 신청대상란에 상속주택을 선택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2. ⑪ 상속지분란 : ⑦ 신청대상란에 상속주택을 선택한 경우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13. ⑫ 소재지 구분이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 수도권 ”란에 √ 표를 하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비수도권 ”란에 √ 표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

3.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 현황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⑥ 신청대상	⑦ 소재지	⑧ 공시가격	⑨ 취득일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주택 현황			
				⑩ 피상속인(사망자)		⑪ 상속 지분	⑫ 소재지 구분
				성명	주민번호		
[] 대체취득주택							[] 수도권
[] 상속주택							[] 비수도권
[] 지방저가주택							
[] 대체취득주택							[] 수도권
[] 상속주택							[] 비수도권
[] 지방저가주택							
[] 대체취득주택							[] 수도권
[] 상속주택							[] 비수도권
[] 지방저가주택							
[] 대체취득주택							[] 수도권
[] 상속주택							[] 비수도권
[] 지방저가주택							
[] 대체취득주택							[] 수도권
[] 상속주택							[] 비수도권
[] 지방저가주택							
[] 대체취득주택							[] 수도권
[] 상속주택							[] 비수도권
[] 지방저가주택							

※ 이 서식은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서울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2. 주택 현황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⑤ 신청대상	⑥ 소재지	⑦ 공시가격	상속주택 현황				
			⑧ 피상속인(사망자)		⑨ 상속개시일 (사망일)	⑩ 상속 지분	⑪ 소재지 구분
			성명	주민번호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 상속주택 또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서울 적용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납세자 제출 서류	무허가 건물 확인서	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물확인서
-----------	------------	-------------	-----------------------------

작 성 방 법

1. ① 성명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주소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4. ④ 전화번호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신청대상란 : “상속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 주택에 대한 상속 지분율이 40%이하 또는 상속된 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6. ⑥ 소재지란 : 신청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7. ⑦ 공시가격란 : 신청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이 때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8. ⑧ 피상속인(사망자)란 : ⑤ 신청대상란에 상속주택을 선택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9. ⑨ 상속개시일(사망일)란 : 피상속인 사망한 날을 적습니다.
10. ⑩ 상속지분란 : ⑤ 신청대상란에 상속주택을 선택한 경우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11. ⑪ 소재지 구분이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 수도권 ”란에 √ 표를 하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비수도권”란에 √ 표를 합니다.

세울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을)

⑤ 신청대상	⑥ 소 재 지	⑦ 공시가격	상속주택 현황				
			⑧ 피상속인(사망자)		⑨ 상속개시일 (사망일)	⑩ 상속 지분	⑪ 소재지 구분
			성명	주민번호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 상속주택							[] 수도권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 비수도권

※ 이 서식은 세울 적용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갑)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	1. ⑤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⑥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⑦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⑧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⑨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6. ⑩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또는 규약 사본 7. ⑪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종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 ① ~ ④ 신청법인: 주택보유 법인으로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할 법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② 세무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⑤ ~ ⑪ 일반세율 적용 법인 구분: 법인의 유형 중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 ⑫ ~ ⑰ 일반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며,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⑫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하며, ㉠ ~ ㉣ 중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보증기금 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초과)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한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합니다.
 ⑬ “공익법인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⑭ “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자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자를 적습니다.
 ⑮ “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적고, 고시일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 고시일을 적습니다.
 ⑯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호수를 적습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사업자는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⑰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1. ① 신청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세대원 전체 기준)을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납세의무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 + 납세의무자(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 1세대1주택 신청 가능

납세의무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 + 배우자(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 1세대1주택 신청 불가

2. ② 신청유형: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최초 신청 후 지분율이 변경되거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 취소"의 []에 ☒ 표시를 합니다.

3. ③ 보유지분: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4. ④ 납세의무자 지정 신청: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만 표시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1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예시 1) 지분이 같은 경우

구 분	보 유 지 분	납세의무자 지정 신청
본 인	50%	[☒]
배 우 자	50%	[]

-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1명을 납세의무자로 지정

(예시 2) 지분이 다른 경우

구 분	보 유 지 분	납세의무자 지정 신청
본 인	60%	※ 공동 소유자 중 주택에 대한 소유지 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배 우 자	40%	

5. ⑤ 공동명의 주택 소재지: 공동 소유한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유예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귀속연도	③ 납부기한	④ 고지·신고세액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기승낙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작성방법

1. '신청인' 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귀속연도' 란에는 납부유예 신청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3. '납부기한' 란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적으며,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를 적습니다.
4. '고지·신고세액' 란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적습니다.
5.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승낙서' 란에 부동산의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6. 이 서류는 납세담보제공서 등 담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5(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의5(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4조의2제4항 본문----- ----- ----- 1세대 1주택자 -----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
②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 ----- ----- ----- -----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
<신 설>	제4조의6(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 ① 영 제4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

제4조의6(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7(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4 제2항-----
----- 별지 제2호의4서식-----

-----.

1.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

2. 영 제4조의4제1항제2호-----

3.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

4. <u>영 제4조의3제1항제4호</u>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u>영 제4조의3제1항제5호</u>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6. <u>영 제4조의3제1항제6호</u>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나. (생략) 7. <u>영 제4조의3제1항제7호</u>의 경우: 종중(宗中)이 발급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 명서 사본 ② <u>영 제4조의3제2항</u>에 따라 서	4. <u>영 제4조의4제1항제4호</u>----- ----- ----- ----- ----- ----- ----- 5. <u>영 제4조의4제1항제5호</u>----- ----- ----- ----- ----- 6. <u>영 제4조의4제1항제6호</u>----- ----- ----- 가.·나. (현행과 같음) 7. <u>영 제4조의4제1항제7호</u>----- ----- ----- ----- ----- ----- ----- ② <u>영 제4조의4제2항</u>-----
--	--

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 ~ 3. (생략) <u>제4조의7(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u>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u>별지 제2호의4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u> ②·③ (생략) <u><신설></u>	----- ----- ----- ----- -----. 1. ~ 3. (현행과 같음) <u>제4조의8(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u> ----- ----- ----- <u>별지 제2호의5서식</u>-----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6조의4(납부유예 신청 관련 서식)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말한다.</u>
---	---